공학교육혁신실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공학교육혁신실(이하 “혁신실”라고 한다”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혁신실은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과 공학교육심화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획, 심의, 실행, 평가 등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한다.

제3조(조직) ① 혁신실에는 공학교육혁신실장(이하 ‘실장’이라 한다)을 두며,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② 혁신실에는 공학교육혁신실운영위원회, 공학교육인증위원회, 공통교과목협의체를 둔다.
③ 혁신실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팀(과) 등을 둘 수 있다.

제4조(공학교육혁신실운영위원회) ① 공학교육혁신실운영위원회는 공학교육혁신실장, 공과대학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학장 또는 실장이 추천하는 학과별 교수 1인 내외의 임명직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총 2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공학교육혁신실장이 된다.
② 공학교육혁신실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특성화된 공학교육과정 및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
2.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의 재원조달 계획 수립 및 실행
3.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의 목표설정 및 평가
4.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의 예산에 적합한 기자재 및 재료 도입 방법 결정
5.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의 기자재 및 재료 도입에 대한 기술적 검토
6. 창의공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7. 기타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③ 위원장은 공학교육혁신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, 산학협력위원 등을 둘 수 있다.

제5조(공학교육인증위원회) ① 공학교육인증위원회는 공학교육혁신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프로그램별 PD(Program Director) 및 분야별 PD를 위원으로 한다.
② 공학교육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공학교육인증 준비를 위한 제반사항
2. 공학교육인증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공학교육인증 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
4. 공학교육인증 교과과정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
5.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
6.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별 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7. 기타 공학교육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프로그램별 PD는 공학교육심화프로그램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6조(공통교과목 협의체) ① 공통교과목 협의체는 공학교육혁신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각 교과목별 팀장 및 팀원을 위원으로 한다.

② 공통교과목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공학교육인증 공통교과목 심의 및 선정
2. 공통교과목 교안의 심의 및 선정
3. 기타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추진관련 특별강의(One Point 레슨 등), 교육에 관한 솔루션/도구 등의 적합성, 도입여부 심의

제7조(회의) 각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8조(운영세칙)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